

<의안번호 제2007- 58호>

# 〔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 11. 1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 11. 20.

## 2. 개정이유

2008. 1. 1.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역모기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7~10인승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년 만료함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감면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하며,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우리 군과 관련없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함  
(안 제5조의2).

- 나.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6조의2).
-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을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으로 함
  - 주택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함
- 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이관(안 제9조의2).
- 「거창군세조례」 제32조(구관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를 이관함
  - 토지분 재산세 경감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확대함
- 라.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5조의2).
- 전방조정자동차 : 승합차 세율로 과세하던 것을 승용차로 과세하면서 2008년에는 66/100을 경감하고, 2009년에는 33/100을 경감함
  - 전방조정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  
2008년에는 33/100을 경감하고, 2009년에는 16/100을 경감함
- 마.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
-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안 제7조제6호)
  - 「과학관육성법」 ⇒ 「과학관육성법」 제6조(안 제7조제7호)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42조제1항 ⇒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 제47조제1항(안 제9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거창군세조례 제32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도서관법 제31조, 제40조, 과학관육성법 제6조,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4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07. 10. 17 ~ 11. 5)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된 것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임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지방세법]

####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8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text{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times 5/100)(n - 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

n : 차령 ( 2 ≤ n ≤ 12 )

2.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
20,000원	100,000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도서관법]

###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0조(등록 및 폐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과학관육성법]

제6조(등록) ①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시설명세서
6. 과학기술자료의 목록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제2항 각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 [문화재보호법]

제5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8조(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자료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문화재의 등록)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제8호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 함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 [거창군세조례]

제32조(구관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관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
4. 농어민 교육 시설용 부동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으로 한다.